

우체국 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우체국 퇴직연금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한다.

제4조 【가입 및 해지】

- ① 이 예금의 계좌 개설시 명의인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며, 금융결제원 퇴직연금 전산 중계망 전문(電文)을 통해 가입·해지 등의 거래가 가능하다.
- ② 이 예금의 가입을 위해서는 사전 우체국이 지정한 취급 우체국에서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제7조 【적용이율】

이 예금의 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또는 자동재예치 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별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 【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를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9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10조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1조 【특별중도해지】

이 예금은 각 항에 해당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신규 가입일 또는 자동재예치 당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예치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 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아래 사유에 해당 시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하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5.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정)
 6.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③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④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
- ⑤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⑥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⑦ 수탁자의 사임
- ⑧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운용 또는 자산운용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유
- ⑨ 계열사내 전직, 사업장간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우체국 내 계약이전
- ⑩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

제12조 【분할해지】

-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근로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단, 다음의 사유로 해지시에는 분할해지 횟수에 산정되지 않으며 제한이 없다.

1.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2.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
- ② 자동재예치 시 분할 해지 횟수는 새로 산정한다.
- ③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또는 자동재예치 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 【기타】

- ① 이 예금은 양도,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 ② 이 예금은 예금주와 우체국간의 금융결제원 퇴직연금 전산 중계망을 통한 전문(電文)으로 거래하며, 통장은 발행하지 않는다.
- ③ 이 예금은 만기 시 최초 계약과 동일 기간으로 원리금이 자동재예치되며, 매 재예치 시점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별 이율을 적용된다.
- ④ 자동재예치 시 우체국이 예금주에게 통지할 사항은 해당 전문으로 대신한다.

부 칙

- ① 이 특약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